

[별표 1] <개정 2001.3.28, 2004.2.28>

기관투자자의 범위(제9조제1항 및 제2항관련)

1.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
구 분	법 인
1	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2	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3	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4	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5	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
6	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7	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8	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
9	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
10	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11 내지 13	<삭제>
14	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15	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16 내지 19	<삭제>

2.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

구 분	법 인
1	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
2	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
3	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(공제사업에 한한다)
4	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
5	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
6	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
7	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
8	대하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
9	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(공제사업에 한한다)